

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

제 3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

2022. 12. 12.(월)

「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149

발의일자 : 2022. 11. 17.

회부일자 : 2022. 11. 23.



문 화 환 경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성태

「경상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김정숙 의원 외 16명

2. 제안 이유

-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·도지사가 시·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- 도지사가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,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 내용

- 도지사는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의2)
- 도지사는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의2)

-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및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)
-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의5)
-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 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 반영

4. 참고사항

- 예산수반(비용추계서) : 미첨부사유서 붙임
- 법제심사(입법정책담당관실) : 붙임
- 규제개혁 심사(법무혁신담당관실) :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(감사관실) 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해당부서 의견(환경정책과) : 붙임
- 입법예고기간 : 2022년 11월 23일 ~ 11월 28일
- 관계법령 :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 의견

☐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

- 빛공해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과 목표 등 빛공해 저감정책

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시·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개정(2020.5.27. 시행)됨에 따라,

-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안 제4조의2는 법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조를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.

[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]

제5조(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(이하 “시·도빛공해방지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②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.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·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환경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- 안 제12조의2는 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¹⁾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

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'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'과 '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'으로 규정한 것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도의 지역별 여건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
- 안 제12조의3은 도지사가 빛방사허용기준²⁾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안 제12조의4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경우, '경상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'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,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12조의5는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그 업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.
- 기타 사항들은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

1)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, 법 제9조.

제9조제1항 시·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**제1종~제4종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**

※ **빛공해** :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

2) 빛방사허용기준은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조명종류·관리구역별로 적용.

판단됩니다.

□ 종합 의견

- 최근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야간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과도한 조명 사용 등으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거나,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피해 등 빛공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, 경북도내 빛공해 민원도 2019년 47건, 2020년 77건에서 2021년에는 158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이처럼, 인공조명으로부터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에 따라 환경부는 제1차 “빛공해 방지 종합계획(2014~2019)”과 “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(2019~2023)”을 수립·시행 중에 있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정부의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따라 도의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, 과도한 조명사용 제한을 위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와 조명환경관리 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·시행(2020.5.17)된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며, 빛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및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- 아울러,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,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,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

문제점이 없어,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 붙임 1. 타 시·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(10개 시·도)
2.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구역(제12조의3)
3. 도내 빛공해 민원현황

붙임 1

타 시·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(10개 시·도)

구분 / 내용	행정구역별 현황			면적별 현황		
	전국지자체 (개)	지정지자체 (개)	비율 (%)	전국면적 (km ²)	지정면적 (km ²)	비율 (%)
총 계	229	67	29.3	100,425.81	10,253.57	10.2
서울특별시	25	25	100.0	605.24	605.24	100.0
부산광역시	16	16	100.0	769.94	769.94	100.0
대구광역시	8	8	100.0	883.52	883.52	100.0
인천광역시	10	8	80.0	1,063.27	478.69	45.0
광주광역시	5	5	100.0	501.18	501.18	100.0
대전광역시	5	5	100.0	539.35	539.35	100.0
울산광역시	5	4	80.0	1,061.54	1,057.54	99.6
세종특별자치시	1	0	0.0	464.91	0.00	0.0
경기도	31	29	93.5	10,187.79	8,668.19	85.1
강원도	18	0	0.0	16,876.05	0.00	0.0
충청북도	11	0	0.0	7,407.85	0.00	0.0
충청남도	15	0	0.0	8,229.20	0.00	0.0
전라북도	14	0	0.0	8,069.07	0.00	0.0
전라남도	22	0	0.0	12,343.58	0.00	0.0
경상북도	23	0	0.0	19,032.87	0.00	0.0
경상남도	18	8	44.4	10,540.12	4,147.10	39.3
제주특별자치도	2	2	100.0	1,850.16	1,850.16	100.0

* 환경부 좋은빛 정보센터(2022년 9월 기준)

붙임 2

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구역(제12조의3)

□ 도내 철새도래지(16개소)

지역번호	지역	시군
154	금호강종류	영천시, 경산시
155, 156	구미 해평, 김천 감천	구미시, 김천시
157, 158	낙동강(일선교-안동시), 내성천	구미시, 안동시, 상주시, 문경시, 영주시, 예천군, 봉화군
159, 160	안동호, 임하호	안동시
161	낙동강(달성-남지)	고령군
170, 171, 172	형산강종류, 형산강하류, 안계저수지	포항시, 경주시
174	울산-구룡포 해안	포항시, 경주시
177, 178, 179	포항-영덕 해안, 영덕-평해 해안, 평해-울진 해안	포항시, 영덕군, 울진군
180	울진-원덕 해안	울진군

□ 도내 천문관측 시설(3개소)

시군	기관명	주소	조성면적	개관일
영천시	영천보현산 천문과학관	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-32	6,879m ²	2009.5.13
영양군	영양반딧불이 천문대	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	563m ²	2005.9.3
예천군	(재)스타항공우주	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078	8,102m ²	2002.3.8

□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(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·장소)

①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용주거지역·일반주거지역·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·도지사가 시·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
- 다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
- 라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
- 마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
- 바.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림보호구역
- 사.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
- 아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
- 자. 관공서·학교·도서관·박물관 「의료법」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·사찰·교회 및 그 부속시설
- 차. 화장장·장례식장 및 묘지
- 카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·일반국도·지방도·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·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
- 타. 다리·축대·육교·터널·고가도로 및 삭도(索道)

붙임 3

도내 빗공해 민원현황

□ 도내 빗공해 민원현황

구분	계	수면방해	농작물피해	눈부심	생활불편	비고
계	575	172	212	30	161	
2021년	158	27	34	9	88	가로등
2020년	77	50	2	9	16	
2019년	47	19	6	3	19	
2018년	128	35	66	3	24	
2017년	112	20	81	4	7	
2016년	40	12	21	0	7	
2015년	13	9	2	2	0	

□ 시군별 민원현황

(단위: 건수)

구분	시군	계	2021년	2020년	2019년	비고
	계	282	158	77	47	
1	포항시	34	7	22	5	
2	경주시	5	2	0	3	
3	김천시	23	6	13	4	
4	안동시	3	2	0	1	
5	구미시	51	12	21	18	
6	영주시	1	0	0	1	
7	영천시	8	3	4	1	
8	상주시	0	0	0	0	
9	문경시	5	2	2	1	
10	경산시	30	20	6	4	
11	군위군	1	0	0	1	
12	의성군	85	84	1	0	
13	청송군	0	0	0	0	
14	영양군	0	0	0	0	
15	영덕군	0	0	0	0	
16	청도군	0	0	0	0	
17	고령군	2	1	0	1	
18	성주군	15	15	0	0	
19	칠곡군	13	3	3	7	
20	예천군	5	1	4	0	
21	봉화군	0	0	0	0	
22	울진군	1	0	1	0	
23	울릉군	0	0	0	0	